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정 2007. 8.16  
개정 2008.11.27  
개정 2013.10.31  
개정 2016. 6.28  
전부개정 2016.12.22  
개정 2017.11.01  
개정 2018. 9. 3  
개정 2021. 4.13  
개정 2025. 5. 8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림대학교 학칙” 제17조에 근거하여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한림대학교(이하 “이 대학교” 라 한다)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자”란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으로서 교원(비전임 교원 포함), 연구원, 대학원생을 말한다.
2. “대학 등”이라 함은 「학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제4호와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5.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6.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7.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이 대학교 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연구자 및 직원
2. 교육부,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 그리고 이 대학교 자체 연구 활동

### 제 2 장 대학과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 제 4 조 (대학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한다.
- ②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협조한다.
- ④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협조한다.
- ⑤ 인지하거나 제보 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며,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협조한다.

- 제 5 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 ②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연구자는 협약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부터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 3 장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업무 등

- 제 6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추천직 위원 등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연구윤리센터장)과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된다. 추천직 위원은 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단, 연구부정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추천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연구윤리센터에서 지원하며, 간사 1인을 두되 연구윤리센터 직원으로 한다.

**제 7 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⑤ 동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승인·의결·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⑥ 본조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8 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제보 접수 및 제보사건 각하에 관한 사항
4. 제보자의 권리 보호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5.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 관한 사항
6. 조사 이후 판정에 관한 사항
7. 재심의 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판정 이후 처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9. 윤리교육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9 조 (위원회의 권한 및 책임)**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사위원”라 한다)을 보호한다.

**제 10 조 (증거보전)** ① 위원장 및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각 위원장(이하 “조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보전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증거보전조치에 대한 총장 승인시 행정지원처는 위원회의 통제하에 신속히 증거물의 압수, 연구실 또는 실험실의 폐쇄·출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전항의 증거보전 조치를 취한 때에는 위원회는 그 내용 및 목록을 작성하여 그 소유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 4 장 연구부정행위

**제 11 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하여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여,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표시하지 않는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 12 조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이 규정과 그리고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제12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이 대학교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지 또는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 5 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 13 조 (제보의 접수)** ① 연구부정행위 제보는 연구윤리센터에서 접수한다.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외부기관으로부터 이관되었거나,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보한 경우로서 해당 증거가 신빙성이

있고 연구부정의혹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때에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제보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연구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가 미비할 경우, 제보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충분히 자료가 보완된 경우 정식 제보로 처리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1. 피조사자 또는 저작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익명의 제보로서 연구부정행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4. 특정 제품의 판매 및 홍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성격의 제보인 경우

**제 14 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대학 등 또는 교육부, 전문기관에 알린 사람을 말한다.

② 총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제보자가 제2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대학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⑥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사람은 본조의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

**제 15 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대학 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0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고, 피조사자가 명예회복을 신청할 경우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16 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 및 직원이 이 대학교 소속인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이 대학교에 있다.

**제 17 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 등이 연구노트, 실험결과 원본 등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정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가 증명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③ 총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8 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장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즉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③ 총장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

④ 총장은 위원회가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 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9 조 (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하는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예비조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 중 1인을 예비조사위원장으로 지명한다. 예비조사위원장은 예비조사위원회의 운영과 결과보고서 작성의 책임을 진다.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 후 30일 이내에 제보내용이 제11조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 등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상당기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예비조사결과가 위원회에서 승인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피조사자가 예비조사에서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위원회는 본조사 없이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⑥ 제3항의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그 판단의 근거
4.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과 증거물

**제 20 조 (본조사)**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본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0%이상(이에는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인사 30%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 후 90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익명제보인 경우 예외)
  2. 조사결과
  3. 본조사위원회 위원 명단
  4.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5. 관련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6.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 ④ 제3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본조사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활동 수행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21 조 (본조사위원회의 운영)** ① 본조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본조사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주재하고 최종결과보고서 작성의 책임을 진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2 조 (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조사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연구부정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포함)
- ②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는 조사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조사위원은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조사위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23 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24 조 (위원회 및 위원의 비밀유지의무)** ①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국가기관의 요구 등 상응하는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 각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 총장 및 관계 교직원은 조사·심의·의결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 25 조 (판정)** ① “판정”은 위원회가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그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6 조 (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다음의 각 호의 사유로 판정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증인이 확보된 경우

2. 본조사 과정에서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나 증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형태로, 본조사 판정 결과에 대하여는 본조사위원회 구성 형태를 갖추어 조사하여야 한다.

**제 27 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 ①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 총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하여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경우 제보자가 이 대학교 소속이면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다른 기관 소속이면 그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그리고 고의에 따른 허위제보의 경우는 총장에게 수사기관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대학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총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 6 장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칙

**제 28 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의 예외)** 총장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 29 조 (재조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26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건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30 조 (조사결과의 제출)** ① 총장은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과제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료한 후 각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1조 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총장은 제2항의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 31 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위원회는 조사 과정을 비롯한 모든 기록(음성, 영상, 또는 문서)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 7 장 기 타

**제 32 조 (경비)** 위원회의 운영과 연구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33 조 (다른 법령 및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 34 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 35 조 (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장이 발의하여 위원회의 의결과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 부 칙

이 제정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교육부 훈령 제260호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전부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